

서울창업센터 관악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22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2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관악에 집적된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2020년 7월부터 「서울창업센터 관악」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
-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, 역량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·사업화,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,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서울창업센터 관악
소재지	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45(봉천동 1662-7)
시설규모	대지 327.4㎡, 건물 993.86㎡(1동)
시설용도	창업지원시설(입주공간, 공유공간, 회의공간 등)

나. 사업개요

- 위탁사무 : 서울창업센터 관악 운영
- 위탁기간 : 2년 4개월(2022.9.1.~2024.12.31.)
- 위탁유형 : 시설형 민간위탁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소요예산 : 548백만원('22년 예산)

다.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○ 추진경위

- 2019. 9. : 제289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
- 2020. 6. :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민간위탁 협약체결
- 2022. 5. :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개최·의결(재위탁 조건부 동의)
- 2022. 5. :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

○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창업센터 관악은 관악에 집적된 인재와 기술을 활용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, 민간 VC 활용 투자유치 연계, 판로개척 등 창업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해 왔음

- 2022년 관악구 낙성대동 등 8개 행정동이 “관악S밸리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”로 지정되는 등 인근 대학의 캠퍼스타운, 시·자치구 창업지원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보다 높아졌음
- 이에 산학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고, 신성장동력 기업 육성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

라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서울창업센터관악의 입주기업 보육 등 사업추진 전반
 - 입주기업 심사·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
 -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·운영
 - 산업간 융합 등 신성장동력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기획, 관리, 홍보 등
 - 졸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
- 산·학·연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방안 수립
 - 우수대학(서울대, 중앙대, 숭실대 등)이 입지한 지역특성 활용 창업활성화 방안
 - 창업공간 및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, 민간 VC 투자유치, 인근 창업지원센터 연계방안
- 서울창업센터관악의 관리 및 운영 전반
 - 안전대책 수립, 재난대책 매뉴얼 작성 등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
 - 청소, 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총괄 등(안전점검, 보안관리 등)
- 기타 위·수탁사무와 관련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가 협의한 사항

마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'22.5.12. 개최)심의 결과 : **적정**(조건이행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○ 「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」

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민간위탁금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창업정책과 남부권창업팀 고중석 (☎ 2133-4876)

김유림 (☎ 2133-4879)